

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역사  
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 
공포한다.

2025년 6 월 30 일

여 수 시 장 조경기



여수시 조례 제2212호

붙임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212호

##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전문인력)”을 “(전문인력 및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운영을 제외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 제5조”를 “제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시의 주요 정책, 사업, 행사 또는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, 사고와 관련된 자료

제8조제1항 중 “안 제7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안 제7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전문인력)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4조(전문인력 및 위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<u>② 시장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운영을 제외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7조(조사대상) <u>안 제5조</u>의 시행 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	<p>제7조(조사대상) <u>제5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시의 주요 정책, 사업, 행사 또는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, 사고와 관련된 자료</u></p> <p>3. ~ 7. (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</p>
<p>제8조(기록물의 생산) ① <u>안 제7조</u>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, 영상, 녹음, 스캔, 문서,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기록물의 생산) ① <u>제7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u>안 제7조</u>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, 장소,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7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